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76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김선교 · 김성원 · 서천호
이헌승 · 박덕흠 · 김위상
김상훈 · 구자근 · 박충권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연의 입장권 가격은 다양한 할인 적용 수단이 적용되며 실제 구입 가격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경우 부정판매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 온라인 암표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상 부정판매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온라인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를 “온라인상에서 그 수단과 관계없이”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포상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제4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 ----- ----- ----- ----- ----- ----- ----- ----- ----- ----- ----- ----- ----- ----- ----- <u>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u> ----- ----- ----- ----- -----.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u>온라인상에서 그 수단과 관계없이</u> ----- -----.
<신 설>	제37조의2(포상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2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6. (생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생략)

<신 설>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벌칙) -----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

-----.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
징할 수 있다.